

제2917호
2022. 4. 27.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전산과장 김영혜
전화: 3396-4951
(http://www.junggu.seoul.kr)

고 시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35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고 시
 - 제2022-35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2
 - 제2022-36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3
- 공 고
 - 제2022-311호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4
 - 제2022-319호 : 2022.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5

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중전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창충동1가 50-16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0길 37-5	2022. 4. 27	신청에 따라 동호로20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동호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중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1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36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0길 37-5	2022.4.27	건물 철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3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행정처분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처분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 공고기간 : 2022. 4. 21. ~ 2022. 5. 6.
4. 의견 제출기한 : 2022. 5. 6.(금)
5. 공고대상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예정	처분사유
1	서울-주택 2019-0117	(주)사이마케팅	정*혜	중구 동호로31길 2, 50*호 (오장동, 덕송빌딩)	경고	연보고현황 미제출
2	서울-주택 2020-0236	운경건설(주)	김*근	중구 남대문로9길 40, 21*호 22*호 (다동, 센터플레이스)	경고	연보고현황 미제출
3	서울-주택 2021-0479	(주)가온건설	안*현	중구 다산로18길 34, 10*호 (신당동)	경고	연보고현황 미제출
4	서울-주택 2019-0212	(주)메이저원	김*태	중구 다산로12길 11 ,2층 20*호(신당동)	영업정지 1개월	연보고현황 미제출

6.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주택과(☎ 02-3396-57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319호

2022.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22.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22. 1. 1.기준

나. 개별주택수 : 5,019호

(단독주택 2,288호, 다가구 812호, 다중 7호, 주상용 1,757호, 기타 155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알뜰한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seoul.go.kr>)

2. 이의신청방법

가. 2022.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구청 세무1과 또는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이의 신청서(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1과,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에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호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2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4,536,935호(아파트 11,765,196호, 연립 526,729호, 다세대 2,245,010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함(이의신청 기간: 2022.4.29.~2022.5.30.).

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소유자 등 의견제출 기간(2022.3.24.~2022.4.12.)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공동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공동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